

신청기관 :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영국 상하수도 인프라 지원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 -템스 타이드웨이 터널 사례를 중심으로-

이동준 | 영국 워릭대 창조산업학 박사과정

I 들어가며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¹⁾에는 5천만 명 이상의 가정 및 비 가정 소비자가 존재하며, 1989년 상하수도 사업이 민영화된 이래 32개의 민간 소유 수도 회사가 영국 내 상하수도의 수질, 위생 및 배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민간 수도 회사들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국 상하수도 회사들은 인프라²⁾ 관련 자산 및 서비스 유지와 개선에 1,30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수 있었다.³⁾ 이에 반하여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는 지속적 시설개량이 필요함에도 저렴한 물값 현실화 문제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수립과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기존 수도법, 하수도법, 물재이용법 등으로는 지속적 인 인프라 개선 및 투자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물산업적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 체계를 검토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영국의 상하수도 인프라 재정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입법 및 정책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영국 물산업 개관

1. 영국 물산업의 역사 및 상하수도 민영화

20세기 초반⁵⁾ 영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공급을 파이프로 처리하며 의회 또는 왕실 현장의 개별법에 의해 스스로 상하수도 서비스를 조직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1,000개 이상의 상수도 관련 조직과

- 1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은 개별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상 본 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 제한하여 적용됨을 알린다.
- 2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편의상 '인프라'라고 칭하기로 함.
- 3 <https://www.ofwat.gov.uk/regulated-companies/ofwat-industry-overview/>
- 4 다만, 국내 물산업의 정책 환경의 현실에서 민영화 도입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 5 영국 상하수도의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지역의 수도시설은 15세기부터 존재하였으나 대부분의 영국 국민에게 수도시설을 통한 물이 공급된 것은 18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하수도 시설도 처음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

1400개 이상의 하수 관련 조직⁶⁾이 존재했다.⁷⁾ 수자원 계획은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거의 조율되지 않은 고도로 지역화된 활동이었고, 전후 법안(1950~1960)은 주로 지역 수자원 조직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자금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는 수자원 계획과 향후 수요 예측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업계의 추가 구조 조정이 촉발되었다. 이후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 흐름에 맞춰 1989년 수도법(Water Act 1989)을 개정하고 수도 기관을 민영화하였다.

1989년 민영화에 따라 기존 지역 수도 기관들은 상하수도 회사로 이전되었고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구조 및 규제 개편이 이뤄졌다. 민영화는 투자 측면에서 산업구조를 크게 개선하였다. 2004년 말까지 기업들은 신규 자산 민영화 이후 약 500억 파운드를 투자했으며 고객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품질은 크게 향상되었고, 수질 환경에 대한 산업의 오염 영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관련 인프라 역시 투자 증가로 인한 긍정적 발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민간 수도 회사들이 지역 독점 기업으로서 제한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안정적인 소비자 규모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점 구조 덕분에 지역 소비자는 상하수도 업체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입법 과정에서도 전기, 가스 사업 민영화와 달리 경쟁 관련 조항이 제정되지 않았다.⁸⁾

2. 관련법률 및 규제기관

(1) 영국 상하수도 관련 주요 법률⁹⁾

1) 1973년, 1983년 수도법

1973년 수도법(Water Act 1973)은 10개의 새로운 지역 수도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각 기관에 대한 재정적 제약과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통합된 기준으로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할 책임을 부과했다. 해당 법은 지역 수자원 기관이 비용 회수를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했으며, 필요시 중앙 정부에서 자본을 차용하고 동시에 수도 서비스에서 얻은 수익으로 필요한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상하수도 기관의 재정 재원의 구조적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더군다나 환경 보호 측면에서 유럽 차원의 규제법 제정 요구가 증가하였고 정부의 재정 지원 부담 역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1983년 수도법(Water Act 1983)에서 헌법적 개정을 하였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였으며, 지방 기관이 민간자본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축소되었다.¹⁰⁾

6 이들 중 대부분은 지방 자치 기구와 같은 단체들이었지만, 법정 민간 수도 회사도 포함되어있었다.

7 <https://www.ofwat.gov.uk/regulated-companies/ofwat-industry-overview/>

8 Edward Potton & Alex Adcock. 2019. Future of the Water Industry in England and Wales. Debate Pack. Parliament UK.

9 주요 상하수도 관련 법률에는 1973년에 제정한 수도법과 1983년, 1989년에 개정하여 수도사업자를 민영화한 수도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1973 제정법은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10개의 권역을 구분하고 감독권을 확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1989년 개정법에서는 국가 주요 하천을 중앙정부 관할로 이관하였다. 본 글의 목적과 지면상 개별 영국 수자원법률(Water Resources Act 1963, 1991)에 대한 세부 검토는 생략한다.

10 양건희. 2012. 영국의 통합 물 관리에 관한 법제 고찰. 최신외국법제정보.

2) 1989년, 2003년 수도법

전술한 바와 같이 1989년 개정 수도법(Water Act 1989)은 물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 환경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이 식수 품질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ii) 국가 하천 당국(National Rivers Authority)이 오염 및 환경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iii) 경제적 규제 기관으로서 물서비스 국장(Director General of Water Services)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수도회사가 198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85)에 따라 등록되고 동일한 규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했다.¹¹⁾ 2003년 수도법은 물서비스규제청(Ofwat: Office of the Water Services Regulation Authority : 이하 Ofwat이라 함)의 권한과 의무를 수정하였으며 물서비스 국장의 기존 권한을 Ofwat에 이양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물산업 내 경쟁 가능성 확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의무화하고 있다.¹²⁾

3) 기타 법령

기타 관련 법령에는 1991년, 1999년 물산업법(Water Industry Act), 1995년 환경법(Environment Act), 1998년 경쟁법(Competition Act) 등이 존재한다. 1991년 제정된 물산업법은 상하수도 회사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99년 물산업법은 1991년 제정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법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개정법은 청구서 미납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의 소비자 미터 강제측정에 대한 제한, 물서비스 국장에게 회사의 요금 부과제도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기업이 평가 가능한 가치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계속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2) 규제기관

주요 상하수도 규제기관에는 환경식품농무부와 Ofwat, 그리고 환경청이 있다. 환경식품농무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이하 Defra라 함)는 영국(잉글랜드)의 표준 설정(standard setting), 입법안 초안 작성(drafting of legislation), 특별 허가(special permits) 등과 관련한 전체 상하수도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¹³⁾ Ofwat은 상하수도 부문에 대한 경제 규제 기관으로서 수도 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도 회사가 제대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영국의 하수도 부문의 환경 규제 기관으로서 영국의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공공 기관이다.¹⁴⁾ 이외

11 Ofwat. 2006. THE DEVELOPMENT OF THE WATER INDUSTRY IN ENGLAND AND WALES.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12 Ibis.

13 웨일스 정부(Welsh Government)는 웨일즈의 전체 수자원 및 상하수도 정책 관련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웨일스 정부와 Defra는 물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14 웨일스의 경우, Natural Resources Wales에서 하수도 부문 환경 규제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목적은 웨일스의 천연 자원이 현재와 미래에 지속 가능한 유지, 강화 및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에도 음용수 수질관리기관인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소비자 위원회인 Consumer Council for Water 등의 규제 관련 기관이 존재한다.

III 상하수도 인프라 관련 사례연구

1. 상하수도 인프라 관련 법령

(1) 2010년 홍수 및 물관리법

2010년 홍수 및 물관리법(Flood and Water Management Act 2010)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홍수와 해안 침식 등의 위험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역 자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수도사업자 인프라의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장관에 권한을 부여 하는 새로운 법률조항¹⁵⁾을 삽입했다. 개정 제2A장의 제36A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관이 상하수도 사용에 대한 인프라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제1항)¹⁶⁾, 그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2항).¹⁷⁾ 그리고 인프라 설계, 시공, 소유 및 운영에 적용되며, 장관의 견해에 따라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능력을 위협하는 규모 또는 복잡한 프로젝트나 작업과 관련하여서만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제3항)¹⁸⁾, 장관은 권한을 부여하여 이를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항).¹⁹⁾ 해당 법률은 재정 지원 이전에 그 전제²⁰⁾가 되는 ‘인프라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s)’의 규제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2) 2013년 물산업법(지정 인프라 프로젝트)(영국 사업체)²¹⁾

이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2010년 홍수 및 물관리법에서 삽입된 1991년 물산업법 제2A장의 이행에 대하여 추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위 법률은 장관과 규제 당국이 제37조(급수체계 유지에 대한 일반적 의무)에 따라 장관 또는

15 PART 2A REGULATION OF PROVISION OF INFRASTRUCTURE

16 (1) The Minister may make regulations about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for the use of water undertakers or sewerage undertakers.

17 (2) The regulations may in particular—

- (a) confer regulatory functions on the Authority;
- (b) apply provisions of Part 2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 (c) make provision similar to a provision of Part 2.

18 (3) The regulations must specify the activities to which they apply: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may—

- (a) apply to designing, constructing, owning and operating infrastructure, and
- (b) define “infrastructure”.

19 (4) The regulations—

- (a) may make provision only in relation to projects or works that in the Minister’s opinion are of a size or complexity that threatens the undertaker’s ability to provide services for its customers, and
- (b) in conferring powers, must restrict them to projects or works that, in the opinion of the person exercising the power, are of a size or complexity that threatens the undertaker’s ability to provide services for its customers.

20 2013년 물산업법(지정 인프라 프로젝트)(영국 사업체)

21 Water Industry (Specified Infrastructure Projects) (English Undertakers) Regulations 2013

Ofwat에게 영국과 웨일즈의 물 부문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²²⁾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정 대상은 현직 상수도 또는 하수도 사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현직 상수도 또는 하수도 사업자가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 장관 혹은 Ofwat에 의해 특정 '인프라 제공 업체'로 지정되면 크고 복잡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납품을 할 수 있다.²³⁾ 다만, 위에서 살펴본 인프라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여 모든 비용이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인하여 수혜를 받는 소비자의 요금에 우선적 재정 기반을 두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정 지원의 대상 역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개별 사업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3) 2012년 물산업법(재정 지원)²⁴⁾

위 개정법에서는 1991년 물산업법²⁵⁾에 새로운 조항(제154A와 제154B)을 삽입하여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12년 물산업법(재정 지원)은 (a) 상수도 또는 하수도 인프라 건설, 또는 (b) 기존 상수도 또는 하수도 인프라와 관련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영국 사업자 및 물 공급 허가 업체들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개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⁶⁾

우선 제154A조(과금 절감을 위한 재정 지원)²⁷⁾에 대해서 살펴보면, 1991년 물산업법 제2장(수도 사업자 및 수도 허가 공급업체를 위한 재정 지원)의 제154조에 추가되었다. 위 법률조항은 수도요금 절감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내용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프라 투자로 인한 가격상승을 조절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제154B조(중요 공사를 위한 재정 지원)²⁸⁾에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근거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본 법 제1항은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a) 상수도 인프라의 건설, 또는 (b) 기존의 상수도 또는 하수도 인프라와 관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²⁹⁾ 재정 지원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공사를 수행할 때, 매우 크거나 복잡한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제2항).³⁰⁾ 또한 재정 지원의 형태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데, (a) 보조금, (b) 대출, (c) 보증 또는 배상,

22 Ofwat. 2015. Criteria for selecting specified infrastructure projects - Ofwat guidance

23 상수도 기업이 특정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 지정에 있어서 경쟁 입찰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관련 위험과 자금 조달 비용을 분리하고 고유한 인프라 제공업체 내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한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24 Water Industry (Financial Assistance) Act 2012

25 Water Industry Act 1991

26 Water Industry (Financial Assistance) Act 2012 CHAPTER 8

27 Financial assistance to reduce charges

28 Financial assistance for major works

29 (1) If the Secretary of State considers it desirable to do so, the Secretary of State may give financial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a) the construction of water or sewerage infrastructure, or

(b) the carrying out of works in respect of existing water or sewerage infrastructure.

30 (2) Financial assistance may be given under subsection (1) only if constructing the infrastructure in question or carrying out the works in question, or doing a combination of those things, involves exceptionally large or complex works.

(d) 보험 제공, 또는 (e) 법인의 주식 또는 증권의 취득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제5항).³¹⁾

2. 상하수도 인프라 관련 정책 및 사례

(1) 국가 인프라 계획(NIP)과 물산업 투자 정책

영국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기구(IPA: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이하 IPA라 함)를 설치하고, 2010년부터 정부 차원의 국가 인프라 계획(NIP: National Infrastructure Plan)을 수립하고 있다. IPA는 주요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우선순위 지정 및 관리하는 통합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 인프라 분야에는 운송, 에너지, 통신, 홍수, 물과 폐기물, 과학이 포함된다. 재정적 지원의 역할로서 위 기관은 영국 보증제도(UKGS: UK Guarantees Scheme, 이하 UKGS라 함)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에 시작된 본 제도는 민간 부문 인프라 채권 및 대출에 대한 재무 지원을 제공하며, 투자자에게 상업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총 400억 파운드의 보증을 제공하여 현재까지 약 230억 파운드의 자본 가치를 가진 10개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이 승인되었다.³²⁾ 정부는 의회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UKGS를 2021년 3월까지 연장하고 있다.³³⁾ 본 보증 제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projects)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영국 정부는 국가 인프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도출하고 시급한 인프라 문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적 비전과 권고안을 수립하고 있다. 물산업 정책과 수자원 인프라의 확충은 국가 인프라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저수지와 같은 새로운 공급원 개발에서부터 수요 관리에 이르기까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기후변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분야이다. 다음에서 살펴볼 템즈 타이드웨이 터널(Thames Tideway Tunnel) 공사 역시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국가 인프라 계획에 포함되어있다.

(2) 템즈 타이드웨이 터널 프로젝트

템즈 타이드웨이 터널 프로젝트(이하 TTT 프로젝트라 함)는 전체 길이가 25km이며, 12개의 런던 자치구를 통과하며, 지름 7.2m에 이르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Ofwat는 2015년 8월 24일에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

31 (5) Financial assistance under subsection (1) may be given in any form and in particular may be given by way of—
(a) grant,
(b) loan,
(c) guarantee or indemnity,
(d) the provision of insurance, or
(e) the acquisition of shares in or securities of a body corpo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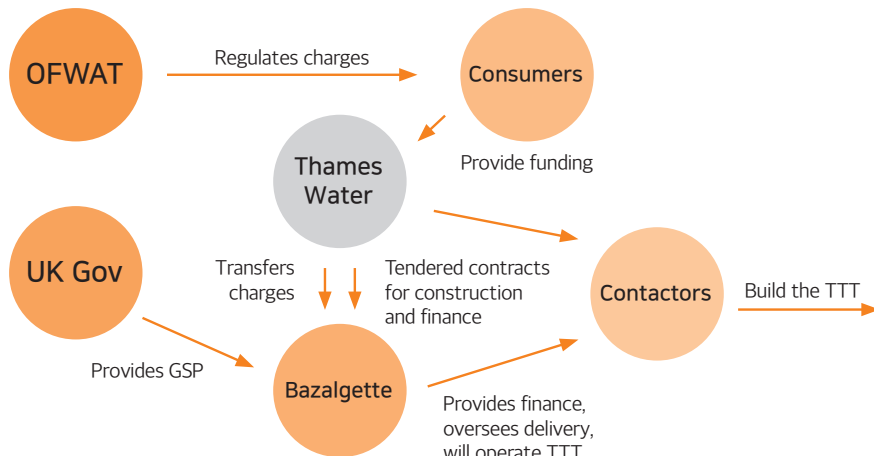
32 상하수도 관련 프로젝트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

33 IPA. 2016.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2021. Reporting to HM Treasury and Cabinet Office.

건설, 금융,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인프라 제공업체'로 Bazalgette Tunnel Limited(이하 Bazalgette라 함)를 경쟁 입찰을 통해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프로젝트 라이선스를 수여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런던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템스강과 주변 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하수 배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템스 워터 수도 업체의 소비자와 Bazalgette을 구성하는 투자자 컨소시엄에 의해 주요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정부 역시 1991년 물산업법 제154B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식품농무부 장관과 Bazalgette 사이의 정부 지원 패키지(GSP: Government Support Package, 이하 GSP 또는 패키지로 함)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³⁴⁾

위 계약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TTT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재정,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라이선스에 대한 다양한 예외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패키지를 순서대로 제공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지원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³⁵⁾ GSP 계약은 TTT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6개의 핵심 계약 문서³⁶⁾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부문이 허용 가능한 비용으로 또는 전혀 충당할 수 없는 예외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정부 지원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6개의 계약 문서 중 하나인 추가 보상 계약(supplemental compensation agreement)의 정부 재정 지원 부분을 살펴보면, 1991년 물산업법 제154B조에 따라 보험에 따른 해당 보험 한도초과 또는 명시된 약관의 각 경우에서 보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청구에 대한 우발적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³⁷⁾ 다음 도식³⁸⁾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사업 및 정부 지원 체계를 이해하기 더욱 용이할 것이다.

1 그림 11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 제도적 측면, 출처: Zhivov. 2018(p. 13)



34 <https://www.ashurst.com/en/news-and-insights/legal-updates/uk-infrastructure-innovations-in-government-support/>

35 IPA. 2016.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Funding and Finance Supplement. Reporting to HM Treasury and Cabinet Office.

36 6가지 핵심 계약 문서는 추가 보상 계약(Supplemental compensation agreement), 시장 파괴 시설,(market disruption facility) 우발적 자본 지원 계약(contingent equity support agreement), 중단 계약(discontinuation agreement), 특별 행정 제안 계약(special administration offer agreement), 주주 직접 합의(shareholders direct agreement)가 있다.

37 Decision: Thames Tideway Tunnel: government support package contract documents

38 Nathan Zhivov. 2018. The Thames Tideway Tunnel: A Hybrid Approach to Infrastructure Delivery.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V 마치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의 상하수도 인프라의 기본적인 투자는 민영화된 수도회사의 자체적인 수도 서비스를 통한 요금을 기반으로 금융 자본 운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 중앙정부 및 Ofwat와 Defra 등의 규제기관의 지원 및 관리 아래 기본 인프라의 확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수도 회사들의 개별 자금으로 확보할 수 없는 대규모 국가 차원의 공사와 인프라 확충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2년 물산업법(재정 지원) 개정을 통하여, 장관에게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개별법상 재정 지원 근거 법령을 마련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 지원 정책에 대한 후속 정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도부터는 IPA를 설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공공분야 인프라 확충과 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하원위원회에서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유럽투자은행(EIB)에 대한 접근권 상실로 남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 인프라 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아도 정부 차원 인프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금 조달을 위한 노력이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⁹⁾

영국의 사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대규모의 사업’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UKGS나 GSP 역시 정부 개입과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직접 보조의 형태보다는 개별 정부 계약을 바탕으로 예비적 보증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외부 금융 자본과 민간 투자의 유입에 따른 민영화된 상하수도 시장에 적합한 구조적 특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 국내 근거 법령과 정책 마련에 있어서 직접적인 적용은 힘들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9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news/government-uk-infrastructure-bank>

참고문헌

Edward Potton & Alex Adcock. 2019. Future of the Water Industry in England and Wales. Debate Pack. Parliament UK.

IPA. 2016.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2021. Reporting to HM Treasury and Cabinet Office.

IPA. 2016.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Funding and Finance Supplement. Reporting to HM Treasury and Cabinet Office.

Nathan Zhivov. 2018. The Thames Tideway Tunnel: A Hybrid Approach to Infrastructure Delivery.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Ofwat. 2006. THE DEVELOPMENT OF THE WATER INDUSTRY IN ENGLAND AND WALES.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Ofwat. 2015. Criteria for selecting specified infrastructure projects - Ofwat guidance

양건희. 2012. 영국의 통합 물 관리에 관한 법제 고찰.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웹사이트

<https://www.gov.uk/>

<https://www.ofwat.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